



제306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[한근수 의원 대표발의]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4. 9. 12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한근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8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제2항)
- 나.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규정 정비(안 제15조제2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미래교육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8. 29. (7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9항에 근거하여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지원금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고 전출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.

검토 결과,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생존수영 등 교육 경비 지급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.

※ 참고사항

■ 근거 법령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 및 제9항

- 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⑨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·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(행전안전부)

<표1> 2024년 기준

308 자치단체 등 이전	08.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
	<p>1.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가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경비로,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에 직접 또는 교육감·교육장을 통하여 보조</p> <p>2.~6.(생략)</p>
	11. 시·군·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
	<p>1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9항 및 시·군·구 조례에 따라 교육·학예 진흥을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</p> <p>2.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각급 학교 또는 유치원에 전출하거나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</p>

※ 참고사항

■ 교육경비 보조 및 전출 관련 조례 현황

<표2> 경기도 조례 개정 현황

연 번	지자체	조례명	주요 내용	제·개 정일
1	양주시	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	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급 학 교 및 유치원에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청 소관 교 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(제 15조제2항)	2023. 12.26.
2	안산시	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	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,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제18조의2)	2023. 12.29.
3	동두천시	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	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에 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, 경기동두천양주교육 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(제6조)	2023. 12.31.
4	구리시	구리시 교육발전 조례	각급 학교의 급식비, 교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(제17조)	2023. 12.26.
5	평택시	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	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 또는 경 기도교육청교육감,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 도록 규정(안제3조의3)	2024. 07.05.
6	안성시	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	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 또는 경 기도교육청교육감,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 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(안제3조의3)	2023. 12.15.

**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**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,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,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원 중 교부금,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② 공립학교의 설치·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12. 29.>

1. 「지방세법」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
2.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[도(道)는 제외한다]
3.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0,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,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,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의 1천분의 36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
④ 시·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,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(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)까지 전출하여야 한다.

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(轉出金)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총 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
⑦ 시·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>

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⑨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·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1. 12. 28.>

⑩ 시·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·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 개정 후 세입·세출 증감 사항 없음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 생존수영 대상학교로 직접 교부하던 보조금을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9항 개정 에 따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상만 변동되는 것으로 기존 생존수영 교육경비에 대한 세입·세출에 대한 증감사항 없음.

### 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이유미